악성·강성민원 유형(제4조 관련)

- 1. 욕설, 폭언, 협박, 모욕, 반말 등 언어폭력 상담진행 중 비하발언, 욕설, 폭언, 협박, 모욕, 반말 등의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경우
- 2. 성희롱

상담사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 밖의 요구 행위

3. 민원요지불명

118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민원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상담진행이 어려운 경우

- 가.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속적으로 중얼거려 요지파악이 어려운 통화
- 나. 본인의 정치적 성향·종교·지식 등을 상담사에게 강제로 주입하려는 통화

4. 반복·억지민원

- 가. 동일한 내용을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수긍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
- 나. 118 상담업무를 벗어났거나 더 이상 민원처리가 불가함에도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
 - 1) 118 상담업무가 아님에도 막무가내로 민원제기
 - 2) 타기관 상담사, 공무원 응대태도 불만에 대해 민원처리 방안을 안내하였으나 118에서 처리할 것을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제기
 - 3) 118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상담을 강요하며 상담사 안내에 꼬투리를 잡으며 불만제기

5. 장시간 통화

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하고, 20분 이상 성실하게 상담을 하였음에도 민원인이 납득하지 않아 상담사가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

- 가. 연결이 어려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전화연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상담사의 말꼬리를 잡으며 장시간 통화
- 나.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진행하였으나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려하지 않고 장시간 통화지속

6. 상습 강요 민원